

언론은 왜 범죄 보도를 하는가

범죄를 비롯한 사건·사고 기사는 언론이 가장 기본으로 여기고 또 중요시하는 기사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언론은 왜 사건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왜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가.

범죄 보도의 1차적 목적은 범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범죄 발생에 이르게 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유사 범죄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시 가장 중요한 목표다.

통상 언론이 범죄를 비롯한 중요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건 자체를 알리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외에 해설 기사가 동반된다. 해설기사에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 즉 상보 외에도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언론이 범죄 보도를 하는 목적을 설명해 준다.

그 외에도 언론의 범죄 보도는 해당 범죄 자체의 수사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도 한다.

사실 기자가 취재해 보도하는 대부분의 범죄와 사건·사고는 1단짜리 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해설기사까지 쓰는 범죄나 사건은 극히 드물기는 하다.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언론은 범죄와 사건을 대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범죄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범죄 보도를 왜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곧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대답이다. 범죄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도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범죄 자체와 사회 구조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인 경우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원이 범죄 보도에서 명시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다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언론은 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익명성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언론 보도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범죄 사건 보도 때 익명성 원칙을 점점 강화해 가는 추세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언론은 성범죄 보도에 있어 다른 범죄보다 더 범죄의 구체적 방법 묘사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 등 인권 보호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 범죄의 특별한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신분과 범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범죄 보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익명성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공인의 범죄도 이 같은 익명성 원칙의 예외 중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인, 특히 좁은 의미에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인물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공인은 일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이나 명예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혹은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인의 경우 공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자격이 '검증'되어야 하며, 국민은 공인의 그와 같은 자격 검증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그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범죄 보도 익명성 예외의 판단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헌법적 권리이며, 이를 위한 언론의 자유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성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신원을 노출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공익적 필요성과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비교衡量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 보도의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언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도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언론이 판단해 보도할 경우 이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범죄 보도 여부 및 내용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고소·고발 접수 단계에서 범죄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의 공식 범죄정보 공개 이후에만 보도하도록 하는 것, 또 성범죄는 유죄 확정 전까지 혐의 보도를 금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첫 번째 의무다. 공인의 자격을 검증하고 감시 비판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공인은 자신을 검증·감시·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방패 삼아 그 뒤에 숨거나, 사생활 보호를 무기로 언론을 침묵하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인 법원과 수사기관 역시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도 언론은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범죄 보도 여부와 내용을 언론 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언론 스스로 사실관계 취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범죄 보도의 공익적 측면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 인권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언론이 최선의 취재와 신중한 판단 없이 범죄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한 경우라면 언론의 책임은 불가피할 것

이다.

아울러 현재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보도 양상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지나친 상업주의와 화제성에 치중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보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